

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정부 수거검사 결과 통보 근거 마련(안 제20조, 별지 제16호서식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정부 수거·검사 적합 결과에 대해 영업자가 요청할 경우 시험성적서 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선함

나. 개정 내용

- 피수거자가 정부 수거·검사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 근거 신설

구 분	현 행	개 선
수거·검사 결과	▲ 정부 수거·검사 부적합일 경우 통보	▲ 정부 수거·검사 적·부에 상관없이 통보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

- 특기할 사항 없음

라. 입법 효과

- 수거·검사 결과에 대한 영업자 알 권리 확보 및 결과 활용도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2. 최종 확인검사 요청시기 및 검사대상 명확화(안 제31조의5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최종 확인검사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검사 요청 시기와 검사 대상을 개선

나. 개정 내용

- 최종 확인검사는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하고, 검사 대상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남아 있는 제품으로 하도록 규정

구 분	현 행	개 선
요청시기	▲ 확인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	▲ <u>자가품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</u>
검사대상	▲ 잔여검체 우선 검사 규정 부재	▲ <u>자가품질검사를 하고 남아 있는 제품</u> 을 대상으로 실시

※ 정부 수거검사에 대한 재검사(제20조의2)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

- 특기할 사항 없음

라. 입법 효과

- 최종 확인검사 과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3. 영문 영업등록증 등 발급 근거 마련(안 제44조의2, 서식제43호의2 등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현재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영문 서류에 대한 발급 근거가 없어 영업자가 신청하면 발급해 줄 수 있도록 절차 마련

나. 개정 내용

- 영업허가증·영업신고증·영업등록증을 영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규정을 마련하고 영문 서식 신설

구 분	현 행	개 선
인허가 서류	▲ 영업허가증·신고증·등록증 국문	▲ 기존 + <u>영문 추가</u>

- 특기할 사항 없음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

- 특기할 사항 없음

라. 입법 효과

- 영문 영업등록증 등 발급으로 국내 제품의 수출에 도움을 주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4.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하위 규정 마련(안 제68조의6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나. 개정 내용

-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정보 조사·분석 등 업무 범위를 정함
-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자료·정보의 제공 요청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
-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전자적 기록·관리 프로그램 개발 보급 근거 마련
-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드는 비용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

- 특기할 사항 없음

라. 입법 효과

-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을 위한 업무범위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집행 도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5. 자가품질검사 검사 대상 및 주기 개선(안 별표12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밀봉·냉동여부에 따라 검사항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검사항목 수가 많은 품목을 대표로 선정하여 자가품질검사 할 수 있도록 개선
- 부적합률이 낮고 미생물 오염 우려 등이 없는 식품유형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

나. 개정 내용

- 동일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밀봉·냉동하여 검사항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더 많은 검사항목이 적용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

구 분	현 행	개 선
검사대상	▲ (예시) 동일 품목의 캔디, 밀봉 여부에 따라 각각 검사 - 밀봉한 캔디: 타르색소, 납, 세균수 - 밀봉하지 않은 캔디: 타르색소, 납	▲(예시) 동일 품목의 캔디, 밀봉한 캔디만 검사

- 추잉껌, 설탕, 침출차 등 29종의 식품유형에 대해 검사 주기를 3개월에서 6개월 등으로 완화하고, 해당 검사 주기가 끝나기 전까지 검사를 의뢰하도록 명확히 규정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

- 특기할 사항 없음

라. 입법 효과

- 자가품질검사 검사 대상과 검사 주기를 개선하여 영업자 부담 감소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6.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차단을 위해 국제표준바코드를 적용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경감 기준 마련(안 별표 23, 안 별표 27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무인매장, 셀프계산대 등이 확산되는 등 식품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국제표준바코드*를 활용하여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차단하는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** 예방 노력과 관리 수준을 고려하여 처분 경감 적용

* 국제표준바코드는 제조·물류·유통 전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범용 식별체계임(특정 업체·시스템에서만 이용되는 바코드는 식품 공급망 전반에 확산하기 어려움)

**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·보관 시 「식품위생법」 제44조 제1항 및 법 제3조 위반

나. 개정 내용

-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차단을 위해 국제표준바코드를 제품에 표시한 식품제조·가공업체 및 해당 바코드를 활용하여 판매 차단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한 판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경감

적용 대상	주요 개선내용
식품제조·가공업	•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 차단에 이용되는 국제표준바코드를 제품에 표시한 경우 - 해당 표시 제품으로 인한 위반에 대하여 1차 행정처분 (영업정지, 품목 제조정지, 품목류 제조정지)을 1/2 범위 경감
기타 식품 판매업	•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·보관한 경우로서,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등 예방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- 해당 표시 제품으로 인한 1차 영업정지 처분(7일)을 시정명령으로 처분
자유업 (편의점 등)	• 소비기한 경과 식품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·보관한 자 중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경우 - 해당 표시 제품으로 인한 1차 과태료(30만 원)를 경고로 처분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

- 특기할 사항 없음

라. 입법 효과

-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를 예방하여 소비자 안전 및 건강 보호
- 무인매장 등 급변하는 식품 유통·환경에서 실효적인 방식으로 위해식품 차단
-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관리 체계 활성화 및 소비자 신뢰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7. 업종 간 변경신고 규정 마련에 따른 서식 신설(안 서식제43호의2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휴게음식점영업·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간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폐업신고 후 신규로 영업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변경신고로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

나. 개정 내용

- 휴게음식점영업·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간의 업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서식 내 변경신고 규정 신설

구 분	현 행	개 선
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	▲ 영업자, 영업소 명칭, 영업소 소재지 등	▲ 영업자, 영업소 명칭, 영업소 소재지 등 + <u>업종 추가</u>

- 특기할 사항 없음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

- 특기할 사항 없음

라. 입법 효과

-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영업자의 편의와 수수료 절감 효과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